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7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김선교·최수진·이헌승

윤상현 • 박충권 • 서천호

김예지 · 김상훈 · 김성원
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·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·수심·체장·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.

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,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·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·채 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4항). 법률 제 호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4항 전단 중 "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"을 "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포획·채취금지) ① ~ ③	제14조(포획·채취금지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시·도지사는 관할 수역의	4
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	
필요하다고 인정되면 <u>제1항의</u>	<u>제1항에</u>
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	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
<u>간 등에 관한 규정</u> 을 강화하여	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간 등에
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	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
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	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
한다.	,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